

2026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운영 목적

구로따뜻한마음재가센터 (이하 “센터”라 한다.) 는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법에 근거를 두고 설립된 재가노인복지시설로써 이용 어르신들 (이하 “수급자”라 한다) 에게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들이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계약의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환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 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한다.

3. 이용대상

1) 서비스 이용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① 일상생활 수행에 지장이 있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의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 인정등급 판정을 받은 자
- ② 노인성질환 또는 노쇠화로 인해 심신의 장애가 있는 자
- ③ 일반 질환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자
- ④ 일상생활 지원서비스가 필요한 독거노인 등.

4. 이용정원

본 센터는 이용정원에 대하여 별도의 정함을 두지 아니한다.

5. 이용자 모집 방법

본 센터는 아래와 같이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이용자를 모집하며, 유인알선 행위 금지, 본인부담금 감경 혹 면제 등 이용자 모집 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준수하며 사회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구분	세부내용
온라인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내 센터 정보 게시 블로그 등 광고 채널을 통한 온라인 검색 문의 확보 등
오프라인	유관기관 협약을 통한 협조 요청 홍보물(명함, 전단, 판촉물 등) 배포(아파트, 행정복지센터 등) 이용자 및 근로자의 지인 소개 등

6. 급여 범위

방문요양 급여는 장기요양원이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 활동 및 가사 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 급여로 한다.

7. 이용계약

- (1) 센터와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 (2)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 센터는 대상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대상자임을 확인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 센터와 대상자(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센터와 대상자(보호자) 각각 1부씩 보관한다.
- (3) 계약기간 - 서비스 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재계약을 해야 한다.
- (4) 계약목적 -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센터)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8. 월 이용료 및 본인부담액 (2026년 기준)

- (1)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 의료급여 수급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40% 또는 60% 경감한다.

(2)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은 아래와 같다.

① 등급별 재가급여 월 이용한도액 (단위 : 원)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 한도액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인지지원 등급 : 676,320원

단,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② 방문요양 급여비용

방문당 시간	수가(원)	본인부담
30분	17,450	2,618
60분	25,320	3,798
90분	34,120	5,118
120분	43,430	6,515
150분	50,640	7,596
180분	57,020	8,553
210분	63,530	9,530
240분	70,080	10,512

③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분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생활수급권자	0%
60% 감경대상자	6%
40% 감경대상자	9%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에 따라 매해 변경될 수 있다.

(3) 비급여 항목 및 그 밖의 이용 부담액은 실비로 한다.

9. 대상자(보호자)의 책임이행

- (1) 대상자(보호자) 및 그 가족은 센터와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2) 대상자의 신변 또는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센터로 통보하여야 한다.
- (3)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센터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 (4) 대상자(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10. 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수급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다.

가) 대상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다)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라) 장기요양보험 등급 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마)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 안내를 대상자(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바)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사) 이용료(본인부담금)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아)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대상자(보호자)가 계약해지를 원하거나, 본조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센터는 서면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거나 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대상자(보호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2회를 초과할 시에 센터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대상자가 다시 센터와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11.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 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 다. 이용계약서상의 서비스 제공시간 및 급여종류가 변경된 경우
- 라.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 마. 변경절차는 계약서(표준약관) 또는 변경계약서에 변경된 사항을 기록하고, 수급자(보호자)와 기관 각 1부씩 보관한다.

12.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1) 권리

-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 수급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

(2) 의무

- 수급자 건강·병적 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 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 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 인적사항, 장기요양보험등급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